

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: 프란치스코 살레시오	미사시간	주일	토요일 주일 : 19:00	
			06:30 (새벽)	10:30 (교 중)
			12:00 (중·고등부)	15:00 (유·초등부)
			18:00 (청 년)	21:00 (밤)
		평 일	06:30 (새벽), 19:00 (저녁), 목요일 10:00	
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.guro3cc.com ☎ 사무실 857-8541 팩스 857-8549	예비자 교리	일요일 오전 09시 / 화요일 저녁 8시		
	유 아 세 례	토요일 오전 11시 (사무실 문의)		
	연령회 회장	김인기 베드로 010-5311-7604/869-5965		

● 모임

단체명	일시	장소
위령봉사회	7월 6일(일) 11:40	보스코홀
M.E.	7월 6일(일) 11:50	6교실
구역장, 반장모임	7월 9일(수) 20:00	식당
우리어머니 Cu.	7월 13일(일) 11:40	교육관
사도들의 모후 Cu.	7월 13일(일) 12:00	식당
사목회의	7월 17일(목) 19:40	식당

● 다음 주일(7/13) 청소 담당 : 16구역

● 알림

- 7월 7일(월) 10:30 살레시오 꿈(CUM) 후원미사
- 7월 10일(목) 시니어아카데미 종강일입니다
- 7월 11일(금) 병자영성체는 구역별로 있습니다
- 7월 16일(수) 11시 교육관에서 경로당 월례미사가 있습니다

● 신자 신앙교육 7월 특강 안내

일시	주제	강사
7/14(월) 19:40	조용한 사람, 안드레아	주임 신부님
7/28(월) 19:40	천동의 사람, 야고보와 요한	

● 전입교우 환영합니다.

구역/반	성명	세례명	이전 본당
60/1	이지상	토마스아퀴나스	광주/봉선2동

● 신입복사단 입단식

- 일시 : 7월 20일 10시30분 교중미사
- 유초등부 전체 참여
- 3시 유초등부미사는 없습니다.

※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립니다.
일회용 대신, 되살림을 선택합니다.
- 가정생명환경분과 -

● 영화와 함께하는 피정

- 매월 셋째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한편의 영화를 상영하며, 상영후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성찰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.
- 일시 : 7월 19일 오후 2시~5시
- 장소 : 교육관 강당
- 대상 : 원하는 신자 누구나

● 유초등부 교리 방학 안내

- 교리 방학 기간 : 7월 ~ 8월
- 방학일 : 7월 6일(일)
- 개학일 : 9월 7일(일)
- 방학기간동안 교리수업은 없으나 유초등부 미사는 있으니 미사참석바랍니다.

● 하절기 미사참례 안내

- 성전내 냉방기운행은 개인별로 맞춰서 운영될 수 없으니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.
- 여름철을 맞이해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● 우리들의 정성(6월 25일 ~ 7월 1일)

교무금		8,733,000원
주일헌금	현금	 4,557,800원
	하상업	 5,000원
2차헌금		2,216,900원
감사헌금	김경두 10만원 임혜경 10만원 익명 5만원	
	정영자 1만원 황정후 10만원 익명 30만원	
	황정애 5만원 남서울떡집 10만원	

●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

월일	해설	복사	독서
7/6	이인옥	도현만 이남식	김덕영 손정주
7/13	구민서	신종구 장희석	최웅조 정연희

● 성체 분배자 명단

월일	토요주일	06:30	10:30	12:00
7/6	이화봉	최웅조	김용진 박용환	조홍환
7/13	장인홍	옥윤필	도현만	하재민 최승일

성가번호 ♪ 입당 : 15 ♪ 예물준비 : 215, 219 ♪ 영성체 : 160, 170 ♪ 파견 : 68



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: 우리은행 129-05-001894 예금주 :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

(※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.)

제 2 편 전례와 성사

제 2 장 성 사

제 1 절 세례성사

제 5 관 세례 예식과 기록

제 63 조 (세례 예식)

1항 만 14세 이상의 사람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교회법 제863조 규정에 따라 교구장에게 미리 허락을 받도록 되어있으나,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(교구사제 특별권한, 제1조 참조).

2항 어른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, 가능하다면 단계적 입교 예식을 거행한다. 단계적 입교 예식을 모두 할 수 없는 경우, 간략한 입교 예식으로도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(어른 입교 예식서, 66.240항; 교구사제 특별권한, 제2조; 사목회의 전례 의안, 60-64항 참조).

3항 세례 예식 중에 예비자 성유를 바르는 대신에 안수 예절을 할 수 있다(어린이 세례 예식서, 51항; 어른 입교 예식서, 65. 218.256항; 1970년도 주교회의 결정, 교구사제 특별권한, 제3조; 사목회의 전례 의안, 75항 참조).

4항 세례는 원칙적으로 이마에 물을 붓는 형식으로 집전한다(교회법 제854조; 입교절차 총지침, 22.30항 참조).

5항 영세자에게 그리스도교 정신에 어울리는 영명을 지어주되, 예비자를 받아들이는 예식때에 그 이름을 미리 지어줄 수 있다(교회법 제855조; 어른 입교 예식서, 65항 4 참조).

6항 어른 세례에 관한 교회법 규정은 유아기를 지나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(교회법 제852조 1항 참조).

제 64 조 (대부 대모)

1항 세례받는 사람은 대부나 대모 한 사람만 세우든지 대부모를 함께 세울 수 있다(교회법 제873조; 어린이 세례 예식서, 6항 참조).

2항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고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는 만 14세이상 된 신자이어야 대부나 대모가 될 수 있다(교회법 제874조; 입교절차 총지침, 10항 2.3; 어른 입교 예식서, 66항 7 참조).

3항 성직자나 수도자는 소속 장상의 허가 없이는 대부모가 될 수 없다(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, 제233조 참조).

제 65 조 (세례 기록)

1항 세례가 집전된 장소의 사목구 주임은 세례 사실을 지체없이 세례대장과 교적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(교회법 제877조 1항; 입교절차 총지침, 29항 참조).

2항 미혼모의 자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확실하면 그들의 이름을 적고 불확실하면 영세자의 이름만 기록한다(교회법 제877조 2항 참조).

3항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부모의 이름을 모두 기록한다(교회법 제877조 3항; 한국 호적법 제66조 참조).